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64
----------	-----

2017. 10. 24(화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4일, 2017년 10월 13일

-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보류

-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진섭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·운용의 효율성 제고

○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협의시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 등

나. 주요내용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지정 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호)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관리·운용의 효율성을 제고,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협의시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나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,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,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규정 개정(안 제13조, 제13조의2)을 신설하였으나,
- 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개정조례안의 제13조와 제13조의 2를 삭제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」

의안번호	제 664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58 회)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64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·운용의 효율성 제고
-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협의시 위원회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 등

2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지정 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입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2017년”을 “2022년”으로 하고,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”로 한다.
제7조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설치) ① (생략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③~④ (생략)	제4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2022년 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-- ----- ③~④ (현행과 같음)	제4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2022년 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-- ----- ③~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(생략) 1. 기금운용관 : 행정국장 2. (생략) 3. (생략)	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(현행과 같음) 1. 기금운용관 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	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(현행과 같음) 1. 기금운용관 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	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	삭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	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	삭제
<신설>	제13조의2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	삭제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금번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5년 연장을 하고,
- 교류사업 의결시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사항은 없음

○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